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2009.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목 차

I. 제안 배경	1
II. 제안 근거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3
1. 제안 근거	3
2. 집단희생 배·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	3
가. 배·보상의 필요성	3
나. 현행 법제도의 한계	6
다. 특별입법의 필요성	8
III. 집단희생 배·보상의 원칙과 방식	11
1. 배·보상 원칙	11
2. 배·보상 방식	11
3. 고려사항	11
IV. 결 론	13
■ 참고자료	
1. 국내 배·보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15
2. 해외 배·보상 사례	1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1. 제안 배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들이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가는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하 ‘집단희생사건’이라 함)의 유가족들은 피해배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집단희생사건의 유가족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이들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송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천 건의 진실규명에 따라 앞으로 피해배상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 년 동안 사건의 진실을 기다려온 유가족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을 인정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유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개별보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이에 개별 소송에 따른 배상방식 대신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보상의 기준과 방식 등을 통일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집단희생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고 그 집단적 성격과 희생 이유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유가족이 겪은 2차 피해의 유형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을 두고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은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문경석달사건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문경석달사건 재판부조차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서는 “결과적으로 국가는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여론,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기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6691 손해배상(기)]

이러한 상황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의 화해조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포괄적이고 공평한 원칙을 가진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학계에 연구를 의뢰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폭넓게 수집·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포괄적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II. 제안 근거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1. 제안 근거

기본법 제4장은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바,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기본법 •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피해 및 명예 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포괄적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2. 집단희생 배·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가. 배·보상의 필요성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집단희생사건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집단희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2009년 상반기)까지 무고하게 희생된 3,200여 명의 민간인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들은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군·경토벌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희생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사건의 성격이나 양상은 유사하다. 대부분 대규모 희생자를 수반하였으며, 그 살해방식 또한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데다가 때로는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었다.

공권력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시나 묵인을 통하여 불법처형 등이 자행된 후 시신을 집단 매장하거나 유기하였고 대부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일부 유해들을 수습하여 임시안치소에 봉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희생사건의 유가족은 대부분 수십 년 동안 피해구제는 고사하고 사건의 진상조차 알 수가 없었다. 설혹 피해 사실 일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커녕 그 진상을 밝혀달라는 민원조차 제기하기가 불가능했다.

이들은 평생 정치적으로는 부역자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했고, 가장과 가족의 사망·실종으로 경제적으로도 곤궁함을 벗어나기 힘들었다.¹⁾ 일부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았지만 그동안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유가족들의 청구를 배척해 왔다. 최근 1심 단계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지만 2심과 3심(대법원)을 거치면서 결국 패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유가족들의 피해와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등에 대한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로 국가가 당면하게 될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조속히 적절한 대

1)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즉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해 살해당한 이른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사건'의 피해자도 이러한 실정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위령사업과 피해구제의 노력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8. 1. 24.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 유가족에게 사과한 바 있고,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이 설치되어 각 과거사관련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정부도 나름대로 화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이러한 일회적이거나 단편적 조치가 아닌 근원적으로 집단희생사건 유가족들의 배·보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과거사정리의 본뜻을 달성하면서 아울러 국가의 기본책무도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계사적인 흐름도 집단희생에 대한 배·보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등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헌법 제29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집단희생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은 소멸시효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는데,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희생자 권리원칙」(2005. 12. 16.)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원칙과 방식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존중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사청산을 이행하는 여러 나라들의 경우도 정치상황과 재정형편에 따

라 액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금전적 배·보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재판을 통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과거사정리를 통한 진실규명 이후의 배·보상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대만 등의 국가들은 차등을 두는 개별지급 방식으로 배·보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보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상징적 보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페루의 사례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나. 현행 법제도의 한계

최근 사법부가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피해구제의 당위성을 표명하자(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과 문경석달사건 판결) 각 지방의 유족회를 포함한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피해구제는 국가를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사법적 절차를 통한 피해구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소멸시효 문제이다. 국가의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가 입증되어도 배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집단희생사건의 역사적 배경이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면, 유가족 등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도리에도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소멸시효 배제를 명시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유가족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재정적 부담을 일정한 한도 내로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이다. 집단희생사건은 그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관련 자료가 멸실되는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에서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해를 당한 많은 유가족의 소송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문제이다. 집단희생사건은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유가족의 수가 많아 이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국가적, 사회적인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다. 더구나 유가족의 상당수가 노령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조치도 시급하다.

한편 재판부별로 판결 결과가 달라 그에 따른 혼란과 불만 등 사회적 갈등도 예상된다.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과 문경석달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 재판부에서 소멸시효완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 같은 상이한 판결에 유가족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외에도 배상 액수의 차이, 소송 미참여자의 불만 등 소송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국가재정 문제이다. 법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요구대로 배상 판결을 선고할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²⁾

다. 특별입법의 필요성

첫째, 포괄적 배·보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입법으로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예방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집단희생사건 관련 법률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들로, 의료지원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배·보상 문제까지를 포괄할 때 진정한 피해 회복을 이룰 것이다.

포괄적 배·보상 방식의 사례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법’)이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

2)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판결(2007. 8.)의 경우 국가 배상액은 유가족 45명에 대해 245억 원이었고, 더구나 사건발생일인 1975년 4월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배상액이 총 637억 원에 달하였다.

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지원법’)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그 취지와 원칙, 방식 등을 원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보상법은 그 제정 취지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보상대상도 포괄적이어서 관련 희생·실종자뿐만 아니라 질환자, 학사징계자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상금도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강제동원지원법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제정 취지로 하여 국가의 상징적 피해구제와 화해조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 법률은 보상금 지급을 정액 위자료 방식으로 하여 사망·실종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등 상징적인 개별 배상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집단희생사건의 유가족이 다른 배상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집단희생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유형이 동질적인 사실상 단일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집단희생사건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성격상 제정 취지, 비인도적 국가행위에 대한 배상,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배상기준, 유족의 기준 등에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수천 건에 이르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일률적인 처리 규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법률의 제정으로 개별 입법의 난점과 중복의 비효율성·비경제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괄입법은 집단희생사건의 피해구제에 대하여 특별한 원칙을 수립하며, 피해구제 방식을 통일하고 배·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법절차

가 제공하는 구제방식은 일상적 분규에 의하여 야기된 권리침해 등에 대한 구제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를 집단희생사건에 적용시켰을 때,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이 집권을 계속하는 동안에 그런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쟁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은 명확하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특별한 조치 또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쟁 시기라는 특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가 행한 비인도적인 범죄는 특별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여러 사례를 통해 공감하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³⁾

따라서 국가는 피해구제를 사법부 판결에만 맡겨 놓고, 포괄적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외면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0헌마509, 2001헌마305, '소위 제주 첫알오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소수의견',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0헌마192, 508, '소위 문경학살 사건의 소수의견', 김시철,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입법부작위 내지 입법과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해설」제75호(2008. 12.) 303쪽, 한인섭,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법과사회」27호(2004. 12.) 137-139쪽 등 참조.

Ⅲ. 집단희생 배·보상의 원칙과 방식

1. 배·보상 원칙

민보상법의 보상 원칙과 같이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2. 배·보상 방식

사망자와 실종 및 후유 사망자 등을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배·보상 한도액을 제한하는 정액금 위자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액금 방식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법과 같은 실질적 일실수익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위자료 지급의 형태가 되는 것이며, 피해사실에 적정한 배·보상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3. 고려사항

배·보상 특별법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들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많아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배상금만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국가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피해 배상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세분화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배상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전쟁 전후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공권력에 의한 희생임이 명백한 사람을 대상으로 배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입증책임 수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 희생 사실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 등에서 진실규명 업무를 승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IV. 결 론

우리 사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은폐된 진실을 밝혀낸 후 화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미래의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집단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또한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배·보상이 매우 시급하며, 이들의 절실한 배상요구에 대하여 국가가 먼저 나서서 형평성 있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를 포용하는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배·보상의 원칙과 방식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 등 관련자의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현재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보상 수준과 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배상은 적정한 액수의 특별 정액금 위자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행 제도와 법률로서는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려우며, 특히 진실이 뒤늦게 밝혀진 지금도 국가가 시효소멸을 이유로 배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가족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포괄적·일괄적인 피해구제 방식은 과거 국가가 행한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소송과 개별 입법에 따른 국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내 배·보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09. 6월 현재)

구분	사건명	청구 내용	판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희생자 유족 등 508명 • 위자료 : 총 1,460억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본인 3억 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억 원 • 형제·자매 1억 원 • 소장 접수 : ’08.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09. 2. 10) • 총 51억 4,600만 원(이자 포함 2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 • 배우자 1,000만 원 • 부모와 자녀 200만 원 • 형제·자매 100만 원 ※ 이자 : 1950.9.1~2009.2.10까지 연 5% • 항소심 진행 중
	문경 석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4명(채의진 외 3명) • 위자료 : 각 3억 원(국가) • 소장 접수 : ’08.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서울중앙지법, ’09. 2. 11) • 항소심 진행 중
	나주 경찰부대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희생자 유족 등 143명 • 위자료 : 총 69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본인 1억 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3,000만 원 • 부모와 자녀 200만 원 • 형제·자매 등 친척 2,000만 원 • 소장 접수 : ’08.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서울중앙지법, ’09. 5. 28) • 항소심 진행 중
인권침해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차풍길 및 일가족 7명 • 위자료 : 34억 원(국가) • 소장 접수 : ’08.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09.5.25) • 총 1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차풍길) : 5억 원 • 배우자 2억 5천만 원 • 자녀(5명) : 각 5천만 원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조용수 형제자매 등 8명, 사건 연루자 양씨 딸 • 위자료 : 97억 원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본인 25억 원 • 부모 및 형제자매 10억/3억 원 • 사건연루자 양씨 딸 30억 원 • 소장 접수 : ’08.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서울중앙지법)
	제23·24회 사법시험면접 탈락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정진섭 의원 등 9명 • 위자료 : 각 2억~3억(법무부장관) • 소장 접수 : ’08.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서울중앙지법, ’09. 5. 7)
	아람회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사건연루자 6명, 유족 37명 • 위자료 : 165억 원(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본인 10억 원 • 가족 4억 원 • 소장 접수 : ’0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서울중앙지법)

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사건 외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09. 6월 현재)

구분	사건명	청구 내용	판결
1	거창 양민학살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유족 323명 • 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1인당 5천만 원 · 유족 1인당 3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대법원, ’08.5.29) •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에 배상 책임 물을 수 없음 • 1심 :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 지급 판결(’01년) • 2심 :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2	인혁당 재건위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유가족 45명 • 위자료 : 340억 원(국가) • 소장 접수 : ’0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07.8.21) • 총 245억원(이자 포함 637억 원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본인 10억 원 · 부모 및 배우자 6억 원 · 자녀 4억 원 ※ 유가족별로 27억~33억 원 정도
3	함주명 간첩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함주명 • 소장 접수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07.9.6) • 14억 원 배상 • 1심 : 원고 일부 승소 • 재심 : 무죄 판결(’05. 7)
4	최종길교수 의문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유족 • 위자료 : 67억 원 (국가 및 당시 수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06.2.14) • 18억 4,000만 원 배상 • 정부 상고 포기(’06.3.10) • 1심 : 패소(’05.1.26)
5	수지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 유족 10명 • 위자료 : 108억 원 (국가 및 윤태식) • 소장 접수 : ’0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03.8.15) • 42억 원 배상 • 정부 항소 포기(’03.9.4)

2. 해외 배 · 보상 사례

가. 해외 배 · 보상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

1) 배 · 보상 자원 확보

- 전액 국가예산 지원방식
 - 스페인, 칠레, 브라질 등

• 참고자료 •

- 국가예산과 특별기금 혼용방식
 - 아르헨티나(공채정리기금), 남아공(대통령기금), 페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대만, 독일(국가와 기업이 절반씩) 등

2) 배 · 보상 방식

- 일반적 방식
 - 몇 가지 수준의 차등을 두어 배상액을 정함(개별 피해정도 입증의 애로 존재)
- 기타 사례
 - 스페인, 페루 : 한쪽의 잘못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거나 차등 보상이 어려운 사안은 일회적 혹은 상징적인 수준의 배상을 하고, 그 외는 일괄적 · 집단적 형식의 배상 방식을 택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일회성 배상보다는 흑인들의 처지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상징적인 보상과 더불어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였음
 - 독일 : 강제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서 일괄적인 상징 보상 후 역사 교육에 치중하거나(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상징적 의미의 보상에 그친 경우도 있음(동독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구제)

3) 배상 방식과 액수 결정 요인

- 영향을 주는 요인
 - 경제적 여건보다는 정치권의 의지나 사회정치적 맥락에 더 좌우됨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남아공 등
 - 빈곤과 불평등 심화국가라는 공통점
 - 직접적인 개별 금전배상보다 상징적인 광범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임

나. 국가별 배·보상 사례 현황표

	배·보상에 관한 근거법령	배·보상 프로그램 명칭	배·보상 시기	보상 담당 기관	배·보상 자원	배·보상 액수 평가 방식	배·보상액수 (전체액수, 1인당 평균액)
스페인	국왕령-법령 (1978)	전쟁 패자 측 병사에 노후연금 지급	사건후 약38년	국가	국가예산	소급적용하지 않되 당사자의 정상적 직업 보수를 산정 지급	
	국왕령-법령 (1978)	부상후유증으로 사망자 혹은 처 단당한 사람의 유가족 : 연금 지급	사건후 약38년	국가	국가예산		
	법령 (1990)	독재 체제의 수감자 보상금 지급	사건후 약50년	국가	국가예산	3년 수감자에게 100만 페세타, 추가 3년마다 20만 페세타	3년 수감자: 100만 페세타(한화 약 600만 원), 추가 3년마다 20만 페세타(한화 약 120만 원)
	법령 (역사기역법, 2007)	독재 시대 수감자들에게 보상금 지급	사건후 약70년	국가	국가예산	3년 수감자 6,010.12유로 추가 3년마다 1,202.02유로	3년 수감자: 일시불로 약 6천 유로(1,000만 원) 추가 3년마다 약 1천 2백 유로(약 200만 원)
	법령 (역사기역법)	수감 도중 처형자 보상금 지급	사건후 약70년	국가	국가예산	일시불로 9,616,18유로 지급	1인당 9천6백유로(일시불로 한화 약 1,700만 원)
	법령 (역사기역법)	1968년~1977년 국가 탄압의 희생자들의 가족에 대한 보상	사건후 30~40년 후	국가	국가예산	일시불로 135,000유로 지급	1인당 13만 5천 유로 (한화 약 2억 4천만 원)
아르헨티나	법률 (1986)	실종자 가족 연금법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1984년 9월) 2년 뒤	보건과 사회 활동부	국가예산		
	국가명령 (1991.1.10)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혜택	CONADEP의 최종보고서 발표 6년4개월 뒤	내무부	국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금 피해자 : 구금일수 × 최상위 공무원 급료의 일일 급여액 (미화 \$27) 사망자 : 기본액수+5년 치 급료 중상자 : 기본액수+사망자 수령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 \$27 × 구금일수 + \$49,275(한화 약 6천4백만 원, 5년 치 급료) 중상자 : \$27 × 구금일수 + \$34,492(한화 약 4천5백만 원, 5년 치 급료의 70%)
	법률 (1991. 11.27) 국가명령 (199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혜택	CONADEP의 최종보고서 발표 7년 2개월 뒤	내무부 인권 차관 보실	공채정리 기금 (일명 Bocon Prov- eedores Serie II)	일일 급여액 (미화 \$74)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 \$74 × 구금일수 + \$136,254(한화, 약 1억7천 7백만 원, 5년 치 급료) 중상자 : \$74 × 구금일수 + \$94,490(한화 약 1억2천3백만 원, 5년 치 급료의 70%)

• 참고자료 •

	배·보상에 관한 근거법령	배·보상 프로그램 명칭	배·보상 시기	보상 담당 기관	배·보상 재원	배·보상 액수 평가 방식	배·보상액수 (전체액수, 1인당 평균액)
아르헨티나	법률 (1994) 국가명령 (1995)	강제 실종에 따른 부재(不在)	CONADEP의 최종보고서 발표 10년 3개월 뒤	내무부 인권 차관 보실	공채정리 기금	실종과 암살 희생자: 최상위 공무원 급료의 월급여액×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224,000페소(국가공채의 권리증서 수여) • 총액: 30억8천2백9십6만 달러(한화 약 4조1천 억 원)
	법률 (2004) 국가명령 (2004)	미성년 피해자 배상	CONADEP의 최종보고서 발표 19년11개월 뒤	법무·안보·인권부 인권 차관실	국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당 224,000 아르헨티나 페소 • 다른 범죄의 피해자: 최상위 공무원 월급여액의 20배 • 중상자(71,288페소×1.5) • 사망자(71,288페소×2) 	총액: 2억 아르헨티나 페소 (2004년 8월 당시 미화 7천1백5십만 달러, 한화 약 929억 5천만 원)
페루	법률 28,592호 (2005.7.29)	포괄적인 배상 프로그램 (PIR) 설치법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2003년 8월)2년 뒤	배상 협의 회	국가예산 경제재정부 태도 모호	배상 수혜자 평가를 위한 희생자 통합등록부(명부)작성 중	논의 중 (개인별 배·보상보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회적 융자 방식 선호)
칠레	법령 19,123	배상연금	1973-90년 사건 피해자 /1992년	연금 정상화 공단 (INP)	국가예산		\$143,000,000 (1992-2003)(한화 약 1천9백억 원) / 1인당 \$537(한화 약 71만 원) (1996)
	법령	정치적 해직자 프로그램	1993-2003	내무부	국가예산		\$507,000,000 (한화 약 6천 7백억 원)
	법령19,123 개정	포괄적 건강치유 프로그램 (PRAIS)	2004-	보건부	국가예산 (시작은 USAID 지원금)		각 의료기관이 담당하므로 계산이 불가능함 피해자에게 무료 치료 혜택
인도	기억,책임 미래 재단 재단법 (연방의회의 결)	강제노동자 보상	55년이후 진상규명 이후	기억,책임 미래 재단 및 다양한 〈협조 기관〉	국가와 기업이 절반씩 전체 50억 유로	협조기관에 신청을 받아 처리 등급별 처리(크게 3등급) 1등급은 최고 1만 5천 유로	44억 유로 (한화 약 7조9천2백억 원) 166만 명에게 1인당 2650 유로(한화 약 480만 원)
	연방배상법		10년 후	국가	국가예산	연금형태(최근까지 450억 유로이고, 다른 것과 합하면 650억 유로(약 100조 원))	모든 형태의 배상연금의 경우는 평균 매월 546유로 (한화 약 100만 원)
남아프리카	TRC법		6년	대통령 기금 관리 기관	대통령 기금	1일 생활비 (단, 친인척과 후손의 수, 도시와 시골 등 생활비용을 차이 고려)	6000랜드(한화 약 120만 원)

● 참고자료 ●

	배·보상에 관한 근거법령	배·보상 프로그램 명칭	배·보상 시기	보상 담당 기관	배·보상 재원	배·보상 액수 평가 방식	배·보상액수 (전체액수, 1인당 평균액)
대 만	2·28사건 처리급 보상조례		조례시행일 (1995년 10월 7일) 로부터 2년	재단 법인 2·28 사건 기념 기금회	국가예산, 기업 .단체 및 개인 출 연, 기금 이자 및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 차등 지급	71억5,900만NT (한화 약 3,200억 원)
	계엄보상 조례		1995년	반관 (半官) 반민 (半民) 의 재단	국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형 이하는 170만 원(한 화 약 6,800만 원) • 형이 1년 늘어날 때마다 30 만 원(한화 약 1,200만 원) 을 증액 • 8년형 이상은 형이 1년 늘 때마다 20만 원(한화 800 만 원)을 증액